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평남 의원
- 나. 의안번호: 제2506호
- 다. 발의일자: 2021. 5. 28
- 라. 회부일자: 2021. 6. 1

### 2. 제 안 사 유

-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과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잔존해 있음.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이라는 말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제안되었으며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널리 사용 중인 용어임.

이에 따라 ‘애완동물’과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1,000만 반려인구 시대와 국민 정서 눈높이를 고려하여 ‘반려동물’, ‘반려견’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 3. 주 요 내 용

- 가. 한강공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중 '애완동물' 용어를 '반려동물'로 개정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 나. 한강공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중 '애완견'에 대한 용어를 '반려견'으로 개정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 의견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사전에 따르면 ‘애완(愛玩)’은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긴다는 의미이며,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는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친구를 의미하는 ‘반려’라는 표현이 대중화 되고 있음.
- 특히, 지난해 2월 11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한 바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종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안과 같이 ‘애완동물’, ‘애완견’이라는 용어를 「동물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춰 ‘반려동물’, ‘반려견’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할 것임.